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7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회부 경위	2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 정비	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회부 경위

□ 개정안의 우리위원회 회부 경과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의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던 개정안도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2026. 3. 9.자로 회부되었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이라 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¹⁾.

○ 개정 전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²⁾) 시설물과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동 사고에 대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위원회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셀프조사는 지적³⁾이 제기되었고, 지난 2025. 1. 14.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사고 피해자 가족 대표는 사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기도 하였음.
- 이에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2026. 1. 15.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후 공포(2026. 1. 27.) 및 시행(2026. 2. 28.)됨에 따라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개정안 역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⁴⁾.

2)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3) 동아일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국토부 책임 의혹…셀프 조사 못 믿어”, 2025.1.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04/130788002/2>

SBS뉴스, “결과 못 믿겠다” 유족들 반발…‘셀프 조사’ 논란된 이유, 2025.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7928&plink=ORI&cooper=NAVER

4)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5. 5. 1. 회부되어, 2025. 8. 21. 상정 및 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계류 중이었음.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 정비

- ☐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략)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9조제2항⁵⁾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

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의학적 용어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함.

○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10조⁶⁾는 “심신장애인”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구 「심신장애자복지법」⁷⁾은 “심신장애(心身障礙)”를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한 바 있음.

6)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7) 구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1989. 12. 30. 시행)되었음.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법률 제375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礙”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현행법의 “심신장애”는 사전적 의미인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환자가 병기되지 아니하여 구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입법례인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함과 아울러 중의적인 용어를 정비⁸⁾하려는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해임·해촉 사유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진단·소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임·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반드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

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증보판), 2023. 12., p.6

-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게 한다.